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12.23) 및 동법시행령(2005.6.23)이 개정되었고, 서울시 조례가 금년 연말로 폐지(2005.12.31)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허가대상 광고물 중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연립간판 등의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설명서·설계도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세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등 생활형 업소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의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에 “가로등 점멸기함과 낙석방지시설”을 추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라. 법 제4조 및 영 제12조·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22조).

- 마.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옥상간판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창문이용 광고물 · 세로형간판 · 공연간판 ·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 전단의 배부방법,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참고하여 표시방법을 신설함(안 제9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
- 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있어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심의대상을 완화함(안 제24조제1항).

III. 검토의견

1. 전부개정 조례 배경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 12. 23.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2005. 6. 23.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하위법규인 시·군·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5. 7. 14. 서울시로부터 이첩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상위법령 및 표준안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2. 조문 내용별 검토사항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허가 · 신고의 첨부서류를 포함한 3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3조)

먼저 안 제23조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위원수의 상·하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맞추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구성 위원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의원 1인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을 보호하는 측면을 감안하면 동조제2항제2호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 (원안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인

3.~4. (원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둘째, 간사 규정 명시 필요성 여부

영 제35조(간사)의 규정에 의하면,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간사 임명을 상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하위법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5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구청장에게 위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제00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담당주사가 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셋째, 기타 사항

조문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및 정부(행정자치부)의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IV.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2004.12.23 법률 제7246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 2005.6.23 법률 제18868호]